

대전지방법원 2024. 5. 22 선고 2024가단213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5. 22.

주 문

-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10.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피고는 소외 C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10. 접수 제13089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박우근

별지 1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도로명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벽돌조

면 적 : 1층 호 57.69㎡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 523.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904 분의 91.02

- 관할등기소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

별지 2

청 구 원 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신용카드 발행 및 관리업무 등 이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하는 신용카드 회사이고, 소외 C는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회원으로 신용카드사용대금을 연체하여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이며, 피고는 소외 C의 배우자로서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완료한 수익자입니다.

나. 원고의 소외 C에 대한 피보전채권

소외 C는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서 약정한 기일에 사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2024. 3. 8. 현재 변제할 금액이 금 17,652,450원(원금 15,623,682원, 이자 737,959원, 연체료 1,290,809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C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23차전 107544호로 신용카드이용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3. 4. 6.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6,200,367원과 그 중 금 761,200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6.8%, 금 263,900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금 14,983,715원에 대하여는 2023.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9%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동 지급명령정본이 소외 C에게 2023. 4. 12. 송달되어 2023. 4. 27. 확정되었습니다.

2.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가.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증여계약

한편, 소외 C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23. 10. 6. 소유자로서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3. 10. 10. 대전지방법원 동기국 접수 제 130897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나. 이때 소외 C는 2011. 2. 25. 가입한 원고의 신용카드회원으로 서 채권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다. 그리고 원고에 대한 소외 C는 신용카드이용대금은 위 증여계약 이 체결되기 이전에 사용되었고 그 무렵부터인 2023. 2. 16.부터 연 체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당연히 원고 취소권의 보전채 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라.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지게 된 소외 C는 별 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어 그 부동산 만이 원 고의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집행할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인데, 소 외 C는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경료한 것입니다.

마. 결국 이러한 점을 볼 때,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위 사해행위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일응 추정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

하는 사해행위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 원상회복으로서 소외 C와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C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23. 10. 6.자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국 2023. 10. 10. 접수 제 130897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고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인 귀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